

2010. 7. 23(금) 10:00

제1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1
2.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4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 - - 8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6. 30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7. 0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7. 16
- 마. 의안번호: 제2010 - 26호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업무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통합망”구축과 함께 신청 및 조사, 사후관리 등이 개인 또는 가구단위로 통합 수행됨에 따라,
- 종전 수행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등 업무처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으로서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보험료의 세부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의를 변경함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120 미만인 자
-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10,400원 미만인 세대

나. 보험료 지원과 관련한 세부 선정기준은 그 지원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한 정의와 내용을 각각 제2조와 제3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불필요한 규정을 없애고,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군수가 결정토록 함(안 제3조, 제5조).

다. 지원대상 세대에 직접 지급하던 보험료의 지원 방법을 공단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그 밖에 조례의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1조, 제6조, 제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소득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 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서는 동조례 시행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저소득계층”의 선정기준을 보면 국민건강 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액 합산금액이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산정근거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3조(지원대상)에서는 보험료 지원대상을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 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해당 세대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는 현재 보험료를 해당가구에 직접 지원하던 것을 보험공단에 일괄지원(대상 995세대, 보험료 4,000천원/월)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밖에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6.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7. 0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7. 16
- 마. 의안번호: 제2010 - 27호

2. 개정이유

- 기능직공무원의 상위 직급 정원채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 수요에 따라 쇠퇴하는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기능6급: 5% 이내(현행) → 7% 이내(조정: 증 2%)
- 기능7급: 14% 이내(현행) → 20% 이내(조정: 증 6%)
- 기능8급: 20% 이내(현행) → 24% 이내(조정: 증 4%)
- 기능9급: 29% 이내(현행) → 31% 이내(조정: 증 2%)
- 기능10급: 32% 이상(현행)→18% 이상(조정: 감14%)

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 5명

- 현행: 473명(본청213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8명)

- 조정: 478명(본청217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9명)

○ 기능직 정원: 감 5명

- 현행: 81명(본청44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 5명, 면8명)

- 조정: 76명(본청40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 5명, 면7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직급별 비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또한 직무범위의 변동 등 행정 수요에 따라 쇠퇴하는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능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본청 및 의회사무과 등 전체 공무원의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정원 81명중 5명을 감원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직급별 비율을 기능10급의 정원 32%를 18%로 감원(감14%)하여 상위직급으로 조정 함으로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행정수요에 따라 일부기능을 조정하는 것임.

- 이 밖에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제3조제2항과 관련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개정안 6급 7%이내를 9%이내로, 개정안 7급 20%이내를 21%이내로, 8급과 9급은 개정안대로, 개정안 10급 18% 이상을 15%이상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 (생략)</p> <p>2. 기능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구 분</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10급</th> </t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비 율</th> <td><u>5%</u> 아내</td> <td><u>14%</u> 아내</td> <td><u>20%</u> 아내</td> <td><u>29%</u> 아내</td> <td><u>32%</u> 이상</td> </tr> </table> <p>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생략)</p> <p>4. 별정직공무원 (생략)</p>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u>5%</u> 아내	<u>14%</u> 아내	<u>20%</u> 아내	<u>29%</u> 아내	<u>32%</u> 이상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2. 기능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구 분</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10급</th> </t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비 율</th> <td><u>7%</u> 아내</td> <td><u>20%</u> 아내</td> <td><u>24%</u> 아내</td> <td><u>31%</u> 아내</td> <td><u>18%</u> 이상</td> </tr> </table> <p>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4.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u>7%</u> 아내	<u>20%</u> 아내	<u>24%</u> 아내	<u>31%</u> 아내	<u>18%</u> 이상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2. 기능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구 분</th> <th>6급</th> <th>7급</th> <th>8급</th> <th>9급</th> <th>10급</th> </tr> <tr> <th style="writing-mode: vertical-rl;">비 율</th> <td><u>9%</u> 아내</td> <td><u>21%</u> 아내</td> <td><u>24%</u> 아내</td> <td><u>31%</u> 아내</td> <td><u>15%</u> 이상</td> </tr> </table> <p>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4.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u>9%</u> 아내	<u>21%</u> 아내	<u>24%</u> 아내	<u>31%</u> 아내	<u>15%</u> 이상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u>5%</u> 아내	<u>14%</u> 아내	<u>20%</u> 아내	<u>29%</u> 아내	<u>32%</u> 이상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u>7%</u> 아내	<u>20%</u> 아내	<u>24%</u> 아내	<u>31%</u> 아내	<u>18%</u> 이상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u>9%</u> 아내	<u>21%</u> 아내	<u>24%</u> 아내	<u>31%</u> 아내	<u>15%</u> 이상																																	

〔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0. 06. 30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0. 07. 0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0. 07. 16
- 마. 의안번호: 제2010 - 32호

2. 변경이유

- ‘08. 10월 거창기상대 승격(1인→10인 기관)에 따른 청사이전 신축이 불가피하여 거창기상대에서 우리군에 신축부지 확보를 요청함에 따라, 군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향후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하고자 함.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친환경대중골프장조성사업”에 우리군이 선정됨에 따라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2009.4.16)시 의결을 득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상지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문화관광과)과 스포츠파크 주변 (돈사) 부지매입(재무과)이 다원화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거창 실버 레포트타운 조성사업」으로 일원화하고, 양 사업간 사이에 있는 잔여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실버 레포트타운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거창기상대 신축부지 교환

○ 처분재산[거창군→국(기상청)]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필지	10,394	100,822			
1	과수원	거창읍 정장리 967-8	10,000	97,000	2010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	거창군
2	"	거창읍 정장리 978-37	144	1,397			"
3	"	거창읍 정장리 978-38	250	2,425			"

○ 취득재산[국(기상청)→거창군]

- 토 지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5필지	15,581	184,571			
1	대	거창읍 김천리 169-9	861	43,825	2010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부지와 교환	국(기상청)
2	구거	거창읍 송정리 1061-22	1,990	26,865			국(기획재 정부)
3	답	거창읍 동변리 952-1	4,516	28,451			
4	답	거창읍 동변리 952-3	3,600	22,680			
5	답	남상면 대산리 1034	4,614	62,750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용 도	소 재 지	면 적				
계			272.12	108,842			
1	1종근린 생활시설	거창읍 김천리 169-9	272.12	108,842	2010	거창기상대 청사 신축부지와 교환	국(기상청)

나.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

○ 당초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7필지	446,000	143,412			
1	임야	가조면 도리 산43	46,347	11,355	2009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최경자
2	임야	가조면 도리 산44	89,058	21,819			이원진
3	임야	가조면 도리 산45	158,579	79,765			이상우
4	임야	가조면 도리 산47	298	79			이동주
5	임야	가조면 도리 산57	27,273	6,682			거창군산림조합
6	임야	가조면 도리 산59	1,091	398			김두성
7	임야	가조면 도리 산60	123,354	23,314			홍해최씨평 촌공파종중

○ 변경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65필지	443,083	294,927			
1	답	가조면 석강리 1	803	1,999	2010 ~ 2011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박종호
2	답	가조면 석강리 2	198	493			박종호
3	답	가조면 석강리 6	641	1,135			박내형외2
4	답	가조면 석강리 8	2,641	6,576			오명환외2
5	답	가조면 석강리 9	1,402	3,491			박광술
6	답	가조면 석강리 10	1,068	2,659			김순옥
7	답	가조면 석강리 11	545	1,357			박광술
8	답	가조면 석강리 12	268	667			박광술
9	답	가조면 석강리 13	291	725			신정춘
10	답	가조면 석강리 14	228	568			신정춘
11	답	가조면 석강리 15-1	2,357	5,869			노영호
12	임야	가조면 석강리 15-2	162	403			변희석
13	답	가조면 석강리 16	2,007	4,997			한유문
14	답	가조면 석강리 17	2,298	5,722			박광술
15	답	가조면 석강리 40	1,907	7,685			박윤제
16	답	가조면 석강리 41	248	618			박희성
17	답	가조면 석강리 42	1,055	4,252			김수길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적				
18	임야	가조면 석강리 43	1,974	1,856	2010 ~ 2011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강호양외2
19	전	가조면 석강리 44	850	2,117			김수길
20	전	가조면 석강리 45	1,498	6,202			김수길
21	답	가조면 석강리 15-1	9,742	24,258			이유진
22	구거	가조면 석강리 1377-2	2,781	2,920			국(농림부)
23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1	7,962	7,182			이유진
24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3	5,914	5,334			이종환외1
25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4	7,736	6,978			강호양
26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3-5	40,959	36,167			이익순외2
27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4	397	365			박부들
28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5	397	365			한갑수
29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6	397	365			한갑수
30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7	13,488	7,715			이병춘
31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8	21,810	5,234			박종호
32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8-1	13,135	3,087			이익순외2
33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8-2	19,674	4,722			이희경외1
34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9	18,031	4,201			이익순외2
35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10	4,565	1,073			신두성
36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2-1	8,821	1,870			박제현
37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2-2	992	366			오정순
38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3	1,983	1,192			박영도
39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	3,183	1,318			신동용
40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3	993	402			이정학
41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9	5,992	3,427			최정근
42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0	6,644	3,800			김남출
43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1	5,467	2,214			박연희외1
44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2	2,052	831	이영근		
45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3	1,966	812	박연희외1		
46	임야	가조면 석강리 산25-14	3,455	1,399	윤영효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지목	소 재 지	면 적				
47	전	가조면 도리 689	754	3,778	2010 ~ 2011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오택근
48	답	가조면 도리 695	843	4,215			오택근
49	답	가조면 도리 696	2,780	12,399			전영범
50	답	가조면 도리 697	2,370	10,570			최병기외1
51	임야	가조면 도리 698	1,025	528			박장근
52	답	가조면 도리 820	1,117	5,094			신원범
53	임야	가조면 도리 산9	66,871	32,901			신원범
54	임야	가조면 도리 산10	198	101			조점출
55	임야	가조면 도리 산11	99	51			조일록
56	임야	가조면 도리 산12	4,364	1,523			상산김씨종중
57	임야	가조면 도리 산13	28,920	7,722			한갑수
58	임야	가조면 도리 산22	23,475	7,794			노철호외1
59	임야	가조면 도리 산23	16,075	5,385			김인용
60	임야	가조면 도리 산24	52,011	11,702			신원범
61	임야	가조면 도리 산24-1	9,905	3,318			박창하
62	임야	가조면 도리 산38	496	356			이현기
63	임야	가조면 도리 산40	298	268	이현기		
64	임야	가조면 도리 산42	198	182	이현기		
65	구거	가조면 도리 산231	307	52	국		

다. 거창 실버 레포트타운 조성부지 변경 취득

○ 당초 취득 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8필지	25,494	361,493				
1	답	거창읍 양평리 1125	1,693	29,966	2010	양평다목적 운동장 조성 (문화 관광과)	김진원	사업비 : 1,300백만원
2	답	거창읍 양평리 1125-1	484	8,567			김진원	
3	답	거창읍 양평리 1125-2	1,807	31,984			양기판	
4	답	거창읍 양평리 1125-3	2,377	42,073			정숙자	
5	답	거창읍 양평리 1126	2,397	29,963			양봉준	
6	답	거창읍 양평리 1126-1	2,445	30,563			신영균	
7	답	거창읍 양평리 1126-2	2,802	39,228			이규식	
8	구거	거창읍 양평리 1086	1,000	14,000			국(농수산부)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9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31-3	2,047	25,588	2010	쾌적한 레포츠 환경개선 (재무과)	김병수	사업비 : 2,500백만원
10	잡종지	거창읍 양평리 1161	659	10,742				
11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1-1	534	4,224				
12	대	거창읍 양평리 1162-1	1,491	24,303				
13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2-2	2,347	28,164				
14	창고	거창읍 양평리 1163-1	465	6,789				
15	대지	거창읍 양평리 1163-4	240	3,720				
16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63-5	29	30				
17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4	1,270	14,986				
18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5	1,407	16,603				

■ 건 물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용도	소 재 지	면 적					
계		3동	1,011.41	12,033				
1	축사	거창읍 양평리 1161외 1필지	838.16	4,808	2010	쾌적한 레포츠 환경개선 (재무과)	김병수	
2	창고	거창읍 양평리 1163-1	77.76	1,400				
3	주택	거창읍 양평리 1163-4	95.49	5,825				

○ 변경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39필지	45,370	624,184	2010			
1	답	거창읍 양평리 1125	1,693	29,966	2010	레포츠 운 성 조	김진원	운동장 장성 화 관 광 과 (문 조 관 광 과)
2	답	거창읍 양평리 1125-1	484	8,567				
3	답	거창읍 양평리 1125-2	1,807	31,984				
4	답	거창읍 양평리 1125-3	2,377	42,073				
5	답	거창읍 양평리 1126	2,397	29,963				
6	답	거창읍 양평리 1126-1	2,445	30,563				
7	답	거창읍 양평리 1126-2	2,802	39,228				
8	구거	거창읍 양평리 1086	1,000	14,000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9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31-3	2,047	25,588	2010 레포츠 운성 타조	김병수	주변토지 매입 (재무과)
10	잡종지	거창읍	양평리	1161	659	10,742		김병수	
11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1-1	534	4,224		김병수	
12	대	거창읍	양평리	1162-1	1,491	24,303		김병수	
13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2-2	2,347	28,164		김병수	
14	창고 용지	거창읍	양평리	1163-1	465	6,789		김병수	
15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63-5	29	30		김병수	
16	대	거창읍	양평리	1163-4	240	3,720		김병수	
17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4	1,270	14,986		김병수	
18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75	1,407	16,603		김병수	
19	대	거창읍	양평리	1125-5	3,793	65,998		장운호	
20	답	거창읍	양평리	1125-4	2,934	51,052		신영자	
21	답	거창읍	양평리	1126-3	795	9,938		김진윤	
22	답	거창읍	양평리	1126-4	1,708	21,350		김진정	
23	답	거창읍	양평리	1131	1,313	16,413		김현락	
24	답	거창읍	양평리	1131-1	1,506	18,825		김현락	
25	답	거창읍	양평리	1131-2	941	11,763		김현락	
26	답	거창읍	양평리	1131-4	2,599	34,567		여상술	
27	대	거창읍	양평리	1163-2	345	5,348		변환길	
28	과수원	거창읍	양평리	1163-3	967	14,989		변환길	
29	구거	거창읍	양평리	1227-9	349	3,340		건설부	
30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32	843	1,779		농수산부	
31	도로	거창읍	양평리	1254-2	55	116		건설부	
32	구거	거창읍	양평리	1227-10	26	94		농수산부	
33	도로	거창읍	양평리	1254	277	1,006		건설부	
34	구거	거창읍	양평리	518	746	3,200		농수산부	
35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2	308	1,321		농수산부	
36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8	219	940		경상남도	
37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11	109	468		경상남도	
38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12	32	137		경상남도	
39	도로	거창읍	양평리	1125-13	11	47		경상남도	

■ 건 물

(단위: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용도	소 재 지	수 량					
계		4동	1,061.00	14,396			2명	
1	측사	거창읍 양평리 1161외 1	838.16	4,808	2010	레포츠 타운 조	김병수	주변건물 매입 (재무과)
2	창고	거창읍 양평리 1163-1	77.76	1,400			김병수	
3	주택	거창읍 양평리 1163-4	95.49	5,825			김병수	
4	주택	거창읍 양평리 1163-2	49.59	2,363			변환길	추가매 입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거창기상대 신축부지 교환안은 2008년 10월22일자로 진주 측후소 거창분실에서 「거창기상대」로 승격됨에 따라 거창기상대에서 우리군에 건물 신축부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군에서 부지매입(3필지 10,394m²)을 완료하고 향후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5필지 15,581m²)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를 보면 거창군유지는 3필지 10,394m²로서 공시지가기준 가액이 1억 82만 2천원이며 기상청 소관 국유지는 5필지 15,581m²로서 공시지가 기준 가액이 1억 8천 457만 1천원으로 평가되어 있어 공시지가 기준 8천 374만 9천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추가 예산을 투자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의 (상호 정산 후 초과분 토지)활용계획과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교환방법: 필지별 감정평가액으로 교환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조치

나.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2008. 12. 2 협약체결 2009. 4.16 제158회 임시회 승인) 당초 대상지로 선정 되었던 가조면 도리 산43번지의 6필지 446천㎡에 대하여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일부 토지소유자의 매수 불응 등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 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골프장 조성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본 사업내에 편입되는 균유지(11필지, 112,093㎡ → 축협이 축사 및 목초지로서 당초 재미교포 어학연수타운 조성 예정지임)에 대하여는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이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 거창실버 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변경 취득안은

양평 다목적 운동장 조성사업(인조잔디구장 조성 등)과 스포츠파크 주변의 악취제거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돈사)부지를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관부서가 문화관광과와 재무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원활한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양 사업간 사이에 있는 잔여 부지를 추가로 매입 총39필지, 45,370㎡의 「거창 실버레포츠 타운」으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거창 실버레포츠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